

전주지방법원 2022. 2. 16 선고 2018나8715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전주지방법원 2022. 2. 16 선고 2018나8715 판결

전주지방법원 2018. 9. 7 선고 2018가단4361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상

담당변호사 우승원

피고, 피항소인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행복한

담당변호사 이동현, 장석재

변론 종결 2021. 12. 8.

판결 선고 2022. 2. 16.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18. 9. 7. 선고 2018가단4361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와 C(주민등록번호 1 생략) 사이에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1. 30. 체결된 명의신탁(또는 증여)약정을 71,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7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제1 예비적으로, 위 명의신탁(또는 증여)약정을 62,026,4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62,026,4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제2 예비적으로, 위 명의신탁(또는 증여)약정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2015. 12. 2. 접수 제15153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C과 D 사이의 2015. 11.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주위적 청구를 위와 같이 정리하고 각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C에게 2013. 2. 25.부터 2013. 3. 29.까지 6회에 걸쳐 합계 7,100만 원을 변제기를 대여일로부터 3개월 후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2) 원고는 위 대여금을 변제받지 못하자 C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에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7. 5. 17. 위 법원으로부터 'C은 원고에게 7,1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29.부터 2017. 5.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2017. 6. 3. 확정되었다.

나.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제1부동산'이라 한다)의 권리관계

(1) C은 2014. 6. 5. D에게 C 소유의 제1부동산을 매도하였고(이하 '제1매매'라 한다), 이를

원인으로 한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2014. 6. 10. 마쳐졌다.

(2) 제1매매 당시 제1부동산에는 근저당권자 E조합(이하 'E조합'이라 한다)이 2008. 11. 3. 경료한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E조합, 채권최고액 4억 5,0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이하 'E조합의 근저당권'이라 한다) 및 근저당권자 F가 2013. 3. 8. 경료한 채무자 C, 근저당권자 F, 채권최고액 1억 원으로 된 근저당권(이하 'F의 근저당권'이라 한다)이 마쳐져 있었다.

(3) D는 제1부동산을 매수하면서 2014. 6. 17. E조합의 근저당권에 관한 계약을 인수하였고, F의 근저당권은 말소되지 않았다.

다.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제2부동산'이라 한다)의 권리관계

(1) C의 남편인 피고는 2014. 6. 9. D 소유의 제2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G조합, 채권최고액 7억 8,000만 원(실제 채권액 6억 5,0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2) 피고는 2015. 11. 30. D로부터 제2부동산을 매수하였고(이하 '제2매매'라 한다), 이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2015. 12. 2. 마쳐졌으며, 위 (1)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제1매매(C의 D에 대한 제1부동산 매도)와 제2매매(피고의 D로부터의 제2부동산 매수)는 그 실질에 있어 교환계약(C과 D의 제1, 2부동산 교환)이므로(갑 제32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계약당사자인 D도 제1매매와 제2매매가 교환계약임을 확인하고 있다), 제2부동산에 제2매매를 원인으로 마쳐진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제1부동산의 매도인이자 교환계약의 당사자인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야 할 것임에도, C과 그 남편인 피고 사이의 2015. 11. 30.자 명의신탁(또는 증여)약정에 기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게 된 것으로 봄이 상당한바, 위 명의신탁(또는 증여)약정은 원고에 대한 채무자인 C이 제2부동산을 자신의 공동담보재산으로 편입시키지 않고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을 마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으로서, 이로 인하여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내지 심화시켰으므로,

위 2015. 11. 30.자 명의신탁(또는 증여)약정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를 전제로 이 사건 주위적 및 각 예비적 청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그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만이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제공되는 책임재산이 되므로 피담보채권액이 부동산의 가액을 초과하고 있는 때에는 그와 같은 부동산의 양도나 그에 대한 새로운 담보권의 설정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바(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3081 판결 등 참조), 제2부동산에 2014. 6. 9.부터 현재까지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G조합, 채권최고액 7억 8,000만 원(실제 채권액 6억 5,0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음은 앞서 본 것과 같고, 갑 제3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제2부동산에 2015. 9. 1.부터 마쳐져 있던 H 명의의 가등기가 2020. 9. 25. 말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위 가등기가 3억 원의 임대차보증금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가등기인 사실 및 제2부동산의 2015. 11. 30.경 가액이 8억 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가 사해행위로 주장하는 2015. 11. 30.자 명의신탁(또는 증여)약정은 당시 제2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담보권의 피담보채권액 합계 9억 5,000만 원(= 근저당권의 실제 채권액 6억 5,000만 원 + 담보가등기의 피담보채권액 3억 원)이 제2부동산의 가액 8억 원을 초과하여 제2부동산 중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제공되는 책임재산이 되는 부분이 없는 경우로서 이를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및 각 예비적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각 예비적 청구도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나상훈

판사오창민

판사조지환

별지